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5. . . (제 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출자	국무위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관리 및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20727호, 2025. 1. 31. 공포, 2026. 2. 1. 시행)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 및 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보완명령 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에 대한 기준(안 제2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부대시설) 기준, 대학·공공연구기관 내 연구시설 사용 시 배타적 사용 권한 필요 기준을 규정함

나.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안 제3조)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원·교원 창업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의 정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기준, 산업분야 또는 서비스분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 전문학사와 동의 학력 기준, 연구전담요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

다.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안 제4조)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대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발급 등을 규정함

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안 제5조)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대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서류 확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발급 등을 규정함

마. 변경신고(안 제6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운영하는 중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 의무를 규정함

바. 보완명령(안 제7조)

기업부설연구소등이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보완기간은 1개월로 하고, 기업의 신청에 따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함

사.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안 제9조)

법 제9조 제3호에 따른 실적 보고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함

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안 제10조, 제11조)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에 대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제출, 심사항목,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발급 등을 규정함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5. 09. 29. ~ 11. 10.)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시설에 대한 기준)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연구공간

가. 고정벽체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하여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한 것으로 본다.

1) 다음의 가)부터 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서 50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 칸막이 등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한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나) 제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형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기관등

다) 정보서비스 또는 소프트웨어개발 공급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2)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환기, 공기정화, 난방, 냉방, 소방, 연구개발 등의 사유로 연구공간을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체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가)부터 다)까지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바닥에서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정벽체(필요시 분리 이동 가능)와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와 구분할 것

나)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전용 공간으로 명확히 식별될 수 있을 것

다) 건축법 등 건축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나.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이하 “연구전담요원등”이라 한다)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연구기자재를 설치한 후의 면적을 말한다) 이상을 확보할 것

2. 연구기자재

제1호의 기준에 맞는 연구공간에 위치할 것

3. 부대시설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제작한 구축물과 연

구전담요원등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회의실, 기숙사 등 연구개발활동에 필요한 편의시설로서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의 주소지에 있을 것 (부대시설을 두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제1항의 기준에 맞는 연구시설을 확보할 때 다음 각 호의 기관 내의 연구시설을 사용하려면 그에 대한 배타적 사용 권한을 보유하여야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4. 국공립연구기관
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전담요원에 대한 기준) ① 영 제6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및 대학의 교원이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이란 제2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또는 교원(이하 “연구원·교원”이라 한다)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휴직·겸직을 통하여 창업하거나 퇴직한 후 3년 이내에 창업한 연구개발형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등이 확보해야 하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1.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1에 따른 자연과학계열·공학계열 및 의학계열(이하 “자연계분야”라 한다)의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사 이상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3. 자연계분야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그 학교를 졸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졸업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정분야의 인

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6.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호에 따른 기술·기능분야의 기능사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4년 이상인 사람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등에서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해당 기업이 영 제6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중견기업(이하 “중견기업”이라 한다)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 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등과 영 별표 1의 유흥 등 관련분야를 제외한 서비스 분야(이하 “인정대상 서비스 분야”라 한다)의 업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의 해당 업종과 관련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적용한다.

1.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1급 이상의 자

격을 가진 사람

3. 전문학사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전문학사 취득 또는 학력 인정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 분야 2급 또는 단일 등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개발 경력(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2년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등에서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이 된 후에도 계속하여 그 기업부설 연구기관등의 연구전담요원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할 때까지는 연구전담요원의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⑥ 제2항제3호 및 제4항제3호의 전문학사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각 호 및 제7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기능 기술자과정을 마친 사람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연

구전담요원으로 할 수 없다.

1.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명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으로 해당 기업의 직원임을 증명할 수 없는 사람

2. 해당 기업의 직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일반대학원(주간) 학위과정에서 수학하는 사람(다만, 기업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박사학위과정 또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석사학위과정에 있는 사람으로 연구개발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나. 기업부설연구기관등에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사람

다. 대표이사, 감사 및 비상임이사 등 직무상 상시 연구개발활동을 전담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창업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소기업”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는 제외한다.

3.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을 보유한 사람 중 산업연수를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산업연수생

제4조(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 등)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한국

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4.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관 및 내부 사진 포함)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한다)

9. 제3조제1항에 따른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한다)

10.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기업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업부설연구소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에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회사 조직도
2.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관 및 내부 사진 포함)
3.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인정대상 서비스 분야 기

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③ 협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변경신고) ① 법 제7조제4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 1의 변경신고 사항을 말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이하 “기업부설연구소등”이라 한다)가 소속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 내용을 적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조(보완명령) 영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완기간은 1개월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보완명령을 받은 기업의 신청에 따

라 1개월의 범위 내에서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인정서 재발급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신청인이 요청하면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인정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을 때
2. 인정서를 분실하였을 때
3. 그 밖에 재발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협회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신청한 기업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절차가 진행 중임을 확인해 줄 수 있다.

③ 협회는 인정서를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등의 변경신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 제출) ① 기업부설연구소등은 법 제9조제3호에 따라 매년 연구개발 실적을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실적의 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①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9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4.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협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소기업 또는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영 제13조제2항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심사항목”이란 별표 2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을 말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는 별지 제11호서식과 같다.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그 공고기간 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에 해당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우수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정서 재발급) ①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서를 재발급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2.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한다)

제12조(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등) 영 제15조제2항에 따른 기업연구개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영 제15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업무의 처리 및 보고 등) ①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의 장은 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는 업무보고의 수신자, 보고 시기 및 주기, 보고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및 보고 등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영 제1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업무처리의 장소에 관한 사항

3. 업무취급자의 선임·해임 및 배치에 관한 사항

4.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관리·보존에 관한 사항

5.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6조의3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제7조제3항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초

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산업디자인전문회사의 경우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문인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구보조원과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로 한다.

제7조제8항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를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로 한다.

제9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0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같은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및 그 밖에 영 제16조의3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⑤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제14조의2에 따른 대학·연구기관·연구소”를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학·연구기관·연구소”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변경신고 사항(제6조제1항 관련)

항 목	변경신고 사항
기업체	명 칭
	소 재 지
	대 표 자
	기업 유형
	업 종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 서	명 칭
	연구 분야
	소 재 지
	기업부설연구소장(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만 해당)
	연구개발인력
	연구공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심사항목(제10조제3항 관련)

I. 제조업 부문 세부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자가 진단 평가	1. 기업역량
	가.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정량)
	2) 경영자의 기술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나. 경영자의 역량·능력 및 리더십
	1)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정성)
	2) 경영자의 사업 추진능력(정성)
	3)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4)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다. 외국인 투자 실적
	1)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라. 외부 혁신활동
	1)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마.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1) 핵심 보유기술 마케팅 활동(정성)
	바.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범위(정성)
	2) 혁신성과 보호방법 및 활동 수준(정성)
	사. 기술개발 및 사업화
	1) 신제품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2) 신제품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3) 신제품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4) 경쟁자 신기술 출시 대응능력(정성)
	아. 대외인증 및 수상
	1) 대외 공정(품질) 관련 인증(정성)
	2) 대외 제품 관련 인증(정성)
	3) 수상실적(가점)
	자. 재무적 성과
	1) 재무 건정성(부채비율)(가점)
	2)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차. 시장경쟁력
	1)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2. 연구소 역량

가.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 1) 기술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 2)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 개발계획(정성)

나. 인적자원

- 1) 연구개발(R&D) 인력비중(정량)
-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정량)
- 3)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 개발 추진능력(정성)
- 4)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 5) 연구개발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다. 연구개발 장비, 표준화 등 연구개발환경

- 1) 연구개발(R&D) 장비 투자비중(정량)
- 2) 연구개발금액(정량)
- 3)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정성)
- 4) 기술표준화 수준(정성)
- 5)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라.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실적

- 1)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수혜 실적(가점)

마. 내부 혁신활동

- 1)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 2) 외부 연구개발비 비중(정량)
- 3) 기술혁신 수행능력(정성)
- 4) 연구개발의 디지털 사업관리시스템(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도입(가점)
- 5)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 6)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바. 외부 혁신활동

- 1)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 2)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사. 핵심 보유기술 관련 활동

- 1) 핵심 보유기술 수준(정성)
- 2)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구성(정성)
- 3) 핵심 보유기술 개발 환경 수준(정성)
- 4) 핵심기술 보완능력(정성)
- 5) 신산업 관련 기술 개발 능력(정성)
- 6) 신산업 관련 기술 활용 능력(정성)

아. 지식재산권

- 1)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정량)

자. 기술개발 및 사업화

- 1) 기술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 2) 경쟁자 신제품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차. 대외인증 1) 대외기술인증(정량) 카. 기술 경쟁력 1) 기술이전 실적(가점) 2) 기술경쟁력 향상도(정성) 3) 기술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발표 심사	1. 연구소·기업 역량 가.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1) 기술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2) 기술혁신 동기부여 수준 나.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1)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2)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다. 내부자원 분석능력 1) 테크놀로지 트리(Technology Tree), 기술 로드맵 구성 수준 2) 보유기술에 대한 스왑 분석(SWOT 분석: 기업 내외의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수준 3) 특허맵(특허권 및 특허 출원 상황을 조사하고 정리하여 분석한 자료) 분석 능력 수준 2. 핵심 보유기술 역량 가. 연구개발인력 1)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비중 2)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수준 3) 핵심 보유기술 개발 인력 증가율 나.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1) 연구개발 장비 구성 수준 2) 핵심 보유기술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3)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수준 다. 기술혁신 수행능력 1) 사업관리시스템(PMS),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2) 연구개발 인력 및 설비 등 자원관리 수준 3) 외부와 협력 등 개방형 혁신 노력 정도 라.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1)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2) 핵심 보유기술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마.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1) 핵심 보유기술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2)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3)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바.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 경쟁력 1)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2) 해당 제품 및 관련제품의 성능 향상 정도 3) 기술 자립도 향상 정도 사. 핵심 보유기술에 의한 시장 경쟁력 1)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2)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3)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1. 핵심 보유기술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여부 가. 핵심 보유기술 개발현황 나. 핵심 보유기술 개발방법 다. 기술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라. 기술의 신뢰도(산업재산권, 국내외 기술인증 등) 2.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가.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나.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겸직 여부 등) 3. 핵심 보유기술 연구환경 가.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 개발환경(시험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나.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등) 4. 그 밖의 사항 가. 핵심 보유기술과 관련된 기술경쟁력 나. 핵심 보유기술의 기술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1.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2.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II. 서비스업 부문 세부 심사항목

구분	심 사 항 목
자가 진단 평가	1. 기업역량 가.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1)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 투자금액 비중(정량) 2) 경영자의 기술(서비스)혁신 및 사업화 의지(정성) 나. 경영자의 역량·능력 및 리더십 1)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정성) 2) 경영자의 사업 추진력(정성) 3) 경영자의 위기관리능력(정성)

4) 경영자의 조직관리 수준(정성)
다. 외국인 투자 실적
1) 외국인 투자 실적(가점)
라. 내부 혁신활동
1) 혁신방법론의 사내 도입 수준(정성)
마. 외부 혁신활동
1) 외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 수준(정성)
바.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마케팅 활동(정성)
사.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범위 및 활동 수준(정성)
2) 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식재산권 구매 활동(정성)
아. 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1) 신서비스 기획 및 개발 능력(정성)
2) 신서비스 경쟁력 분석 능력(정성)
3) 신서비스 수명주기 분석 능력(정성)
4) 경쟁자 신서비스 출시 대응능력(정성)
5) 연구개발에 의한 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성과(정성)
자. 대외인증 및 수상
1) 대외수상실적(가점)
차. 재무적 성과
1) 외부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 실적(가점)
2) 사업화 매출에 의한 자금 유동성(정성)
카. 시장경쟁력
1) 시장경쟁력 향상도(정성)
2. 연구소 역량
가. 경영자의 혁신 의지 및 전략
1) 기술(서비스)개발 중장기 전략 및 목표 수준(정성)
2) 중장기 사업 및 신기술(서비스) 개발계획(정성)
나. 인적자원
1) 연구개발(R&D) 인력비중(정량)
2)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비율(정량)
3) 연구개발인력의 신기술(서비스) 개발 추진능력(정성)
4) 체계적 정보검색 및 분석능력(정성)
5) 연구개발 조직 및 인력 관리 수준(정성)
다. 연구개발 환경
1) 프로젝트 자원관리 및 시설장비 기반 장치 보유(정량)
2) 연구개발금액(정량)

3)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 관리 수준(가점)
4) 새로운 혁신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수준(정성)
5) 기술(서비스) 표준화 수준(정성)
6) 연구개발환경 수준(정성)
라.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실적
1) 정부 연구개발(R&D) 지원 수혜 실적(가점)
마. 내부 혁신활동
1) 연구개발인력 1인당 연구개발비(정량)
2) 연구개발비 중 교육훈련비 투자 비중(정량)
3)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정성)
4) 기술개발 외부환경 분석(정성)
5) 기술개발 내부자원 분석(정성)
바. 외부 혁신활동
1) 공동연구개발 형태(공동-위탁 등)(정성)
2) 외부 협력기관 구성(복합-단순 등)(정성)
사.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활동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수준(정성)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구성(정성)
3)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환경 수준(정성)
4) 핵심기술(서비스) 보완능력(정성)
5)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개발 능력(정성)
6) 신산업 관련 기술(서비스) 활용 능력(정성)
아. 지식재산권
1) 기업 보유 지식재산권(정량)
자.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1) 기술(서비스)개발 및 사업화 수준(정성)
2) 경쟁자 신제품(서비스) 및 신사업 출시 대응능력(정성)
차. 대외인증
1) 대외 서비스 인증(정량)
카. 기술(서비스) 및 시장 경쟁력
1) 실시권, 상표권 등 권리 이전 실적(가점)
2) 기술(서비스) 경쟁력 향상도(정성)
3) 기술(서비스)변화 행동능력 향상(정성)
발표 심사
1. 연구소·기업 역량
가. 경영자 기술(서비스)혁신 리더십
1) 기술(서비스) 혁신 관련 사업화 의지 정도
2) 기술(서비스)혁신 동기부여 수준
나. 중장기 전략·목표 수준
1) 전략 및 목표의 구체성 수준
2) 전략 및 목표의 실현 가능성 정도

	다. 내부자원 분석능력 1) 기술(서비스) 로드맵 구성 수준 2) 보유기술에 대한 스왑 분석(SWOT 분석: 기업 내외의 환경 요인을 파악하여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방법) 수준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역량 가. 연구개발인력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비중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수준 3)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인력 증가율 나. 연구개발 장비 및 환경 1) 연구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구성 수준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 프로젝트 예산 및 기간 3) 인센티브, 직무발명보상제 등 연구원 보상 시스템 수준 다.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1) 사업관리시스템(PMS, project management system), 전사적 자원 관리(ERP,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기업 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등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산관리 시스템 수준 2)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 등 자원관리 수준 3) 외부와 협력 등 개방형 혁신 노력 정도 라.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건수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지식재산권 권리 범위 등 질적 수준 마. 기술개발·사업화 (예상) 실적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2) 성공이 예상되는 기술개발·사업화 실적 3) 사업화에 의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 수 바.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기술 경쟁력 1) 원가절감 수준 향상 정도 2) 해당 서비스 및 관련 서비스의 성능 향상 정도 사.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의한 시장 경쟁력 1) 시장선점 가능성 제고 정도 2) 매출액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3) 가격 경쟁력 성장 가능성 제고 정도
현장 심사	1.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에 대한 연구활동 수행 여부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현황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개발방법 다. 기술(서비스)개발을 위한 문제점과 한계성 극복정도 라. 기술(서비스)의 신뢰도(지식재산권, 국내외 서비스 인증 등) 2. 핵심 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연구인력 현황 가. 연구인력 보유 적정성(인사발령서, 관련분야 학위 보유)

	나. 연구인력의 실제 연구활동 수행여부(연구개발 이외 활동 검직 여부 등) 3.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연구환경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관련 개발환경(관련 소프트웨어, 설비 및 장비 등 보유) 나. 연구공간의 적정성(독립된 연구공간 보유 등) 4. 그 밖의 사항 가. 핵심 보유기술(서비스)과 관련된 시장경쟁력 나. 핵심 보유기술(서비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활동
종합 심사	1. 지정의 적합성(지속적인 가치창출 가능 여부 등) 2. 지정의 필요성(지정에 따른 파급효과 등)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제정 202 . 00. 00.>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신포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전화번호	이메일	
	⑥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기업 부설 연구 기관	⑪ 기업부설 연구기관명	⑫ 설립 연월일			
	⑬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근무 형태 []전임 []겸임	
		전화번호		이메일	
	⑭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⑮ 신청분야	[]과학기술		[]서비스	
	⑯ 연구분야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부동산 및 임대 []운수 []교육서비스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도매 및 소매 []숙박 및 음식점 []금융 및 보험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기타			
		KSIC:			
	⑰ 주 연구 내용	KSIC:			
	⑱ 연구개발 인력	연구전담요원 명	연구보조원 명	연구관리직원 명	⑲ (연구기관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총
	⑳ 연구공간	[] 건물 전체 [] 소유 건물 m ² [] 임대		[] 독립공간 [] 소유 m ² [] 임대	[] 분리구역 [] 소유 [] 임대 m ²

㉔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
	연구시설비	백만원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첨부 서류	1. 연구개발활동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회사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조직도 1부 5.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부설 연구기관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인을 포함합니다) 1부 6.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 명세서 1부(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7.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입한 보험의 가입증명서(연구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 총수가 10명 이상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8.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포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⑯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부설 연구기관만 해당합니다) 9. 연구원·교원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해당합니다) 10.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기업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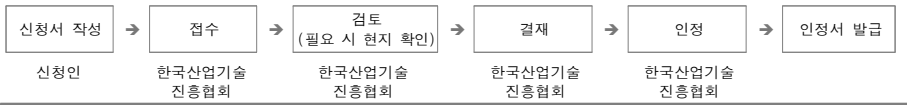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④의 "주요 생신포"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정설계 등).
-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⑦의 "매출액"란은 신청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 ⑪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부설 연구기관을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 ⑫의 "소재지"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 ⑬의 "신청분야"란은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선택합니다.
- ⑭의 "연구분야"란은 ⑮의 신청분야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KSIC 중분류 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⑮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 ⑯의 "주 연구 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⑰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 ⑱의 "연구기자재"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 ⑲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자사 소유 건물 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 전체: 건물 전체를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 연구기관으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 ㉔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연구개발활동 개요서

① 주요 업무

② 전문 분야

③ 신청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

연 도	년도 월 ~ 년도 월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 개요서 작성방법

◇ ①의 '주요 업무'란에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수행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②의 '전문 분야'란에는 신고하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가 연구개발을 수행할 때 요구되는 전문적인 기술 분야 및 그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목표를 간략히 적습니다.

◇ ③의 '신청일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연구과제'란에는 신청일부터 향후 1년 동안 수행할 연구과제를 연구과제명, 연구 내용,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연구기자재 현황

① 일련번호	② 품명	③ 수량	④ 설치 부서 / 설치 위치
위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연구기자재 현황 작성방법

◇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 안에 있는 기자재 중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되는 연구기자재만을 기입합니다[사무책상, 팩스, 전화기, 복사기, 등의 사무용기기와 서버(Server), 허브(Hub) 등의 통신수단 및 한글 등 일반적 인 범용 소프트웨어는 해당하지 않으나 개발물로 사용되는 전용프로그램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①의 '일련번호'란에는 연구기자재의 일련번호를 기입합니다(1, 2, 3, 4 ... 를 의미합니다).

◇ ④의 '설치 부서/설치 위치'란에는 연구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의 세부 부서명을 적습니다(세부 부서가 없으면 기업부설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연구기자재 현황]의 작성 장수는 제한이 없으므로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1. 현 황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연구전담요원						
계						

2. 연구원 현황											
② 구분	③ 일련 번호	④ 직위	⑤ 성명	⑥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⑦ 소속 부서	⑧ 최종 학교 (전공학과)	⑨ 최종 학위 (학위번호)	⑩ 병적 사항	⑪ 발령일	⑫ 신규 편입 여부	⑬ 연구시설 내 근무 여부
⑭ 기업부설 연구기관장										[] 전임 [] 겸임	[] 여 [] 부
⑮ 연구 전 담 요 원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연구개발인력 현황 작성방법

- ① 및 ⑮의 "연구전담요원"란에는 연구개발과 관련된 연구업무를 하면서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적습니다.
- ④의 "직위"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부여된 직위를 적습니다(예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원급 등).
- ⑦의 "소속 부서"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소속 부서명(예 : 자동화제어연구실, 연구1실 등)을 적습니다. 다만,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세부 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다면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적습니다.
- ⑧의 "최종 학교" 및 ⑨의 "최종 학위"란에는 최종 학교명과 전공학과명 및 최종 취득학위와 학위번호를 적습니다. 다만, 고등학교, 전문대 졸업자나 국외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학위취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졸업연도를 적고,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최종 학교"란에 자격증 종류(○○○○기사, ○○○○산업기사 등)를, "최종 학위"란에 자격증번호를 적습니다.
- ⑩의 "병적사항"란에는 병역필, 병역면제, 병역특례, 특례필 등으로 적습니다(여자의 경우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입합니다).
- ⑪의 "발령일"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적습니다(회사 임사일이 아닙니다).
- ⑫의 "신규 편입 여부"란에는 변경신고인 경우 새로 편입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만 "신규"로 적습니다(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지 않습니다).
- ⑬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란에는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의 연구시설 내 근무여부를 표시합니다(자택 등 연구시설 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부"에 표시합니다).
- ⑭의 "기업부설 연구기관장"란은 기업부설연구소만 적습니다.

※ 적을 난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 소재지:
-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	-----	------	-----

신청인 (기업)	① 기업체명 (홈페이지 :)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업종(KSIC)		
			④ 주요 생산품		
	⑤ 대표자명		생년월일	성별	내국인/외국인
			전화번호		
			이메일		
	⑥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⑦ 매출액(년도)		백만원		
⑧ 종업원 수(년)			명	⑨ 개업 연월일(년 월 일)	
⑩ 기업 유형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기업 [] 소기업 [] 벤처기업(년 월 일) []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 그 밖의 유형				

기업의 연구 개발 부서	⑪ 연구개발부서명		⑫ 설립 연월일			
	⑬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⑭ 신청 분야	[] 과학기술		[] 서비스		
	⑮ 연구 분야	[] 건설 [] 금속 [] 기계 [] 생명과학 [] 섬유 [] 소재 [] 식품 [] 전기전자 [] 화학 [] 환경 [] 산업디자인 [] 기타		[]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 부동산 및 임대 [] 운수 [] 교육서비스 []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 [] 도매 및 소매 [] 숙박 및 음식점 [] 금융 및 보험 []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 기타		
		KSIC:		KSIC:		
	⑯ 주연구내용					
	⑰ 연구개발인력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원	연구관리직원	⑱ (연구개발부서 내 위치한) 연구기자재	종
		명	명	명		
	⑲ 연구공간	[] 건물 전체		[] 독립공간		[] 분리구역
[] 소유 건물 m²		[] 임대 건물 m²	[] 소유 m²	[] 임대 m²	[] 소유 m²	

㉔ 연구개발투자 (년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백만원
	연구시설비	백만원
	그 밖의 연구개발투자액	백만원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첨부 서류	1. 연구개발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1부 2.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1부 3.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1부 4. 회사 조직도 1부 5.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한 층의 전체 도면 및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관 및 내부 사진을 포함합니다) 1부 6.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⑭의 신청분야가 서비스인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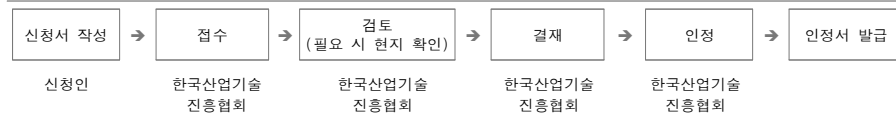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1. ③의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2. ④의 "주요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게임, 조경설계 등).
3. ⑥의 "주소"란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 소재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4. ⑦의 "매출액"란은 신고일 기준 최종 결산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준연도를 적습니다.
5. ⑧의 "종업원 수"란에는 가장 최근의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6. ⑨의 "개업 연월일"란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 연월일을 적습니다.
7. ⑩의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8조,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를 기준으로 선택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일 경우 유효기간을 적습니다.
8. ⑫의 "설립 연월일"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를 설립한 날짜를 적습니다.
9. ⑬의 "소재지"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가 위치하고 있는 주소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습니다.
10. ⑭의 "신청 분야"란은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연구개발활동에 따라 해당 분야를 택합니다.
11. ⑮의 "연구 분야"란은 ⑭의 신청 분야에 따라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분야를 분야를 선택하고, 해당 분야의 KSIC 중분류 코드를 적습니다. 다만, ⑭에서 "서비스"를 선택한 기업은 해당 기업의 주 업종과 관련한 연구 분야를 선택합니다.
12. ⑯의 "주연구내용"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13. ⑰의 "연구개발인력"란에는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의 직원 수를 적습니다.
14. ⑱의 "연구기자재"란에는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기자재 수를 적습니다.
15. ⑲의 "연구공간"란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의 아래 형태에 따라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을 선택하고 각각 자사 소유 건물일 경우에는 "소유", 임대건물일 경우에는 "임대"를 선택합니다.
 - 건물전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건물의 전체 연면적 기재)
 - 독립공간: 별도의 출입문을 갖추고 사방이 고정된 벽체로 천장까지 구분한 공간
 - 분리구역: 칸막이 등으로 연구공간을 구분한 경우

※ 다만, 분리구역의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의 연구개발부서로서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을 연구공간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만 선택합니다.
16. ⑳의 "연구개발투자"란에는 신청한 해부터 향후 1년간의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투자계획을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인건비", "연구시설비", "그 밖의 유형"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신청서류 처리절차



210mm×297mm(백상지 80g/㎡)

제 호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소재지:

3. 신청 연월일: 년 월 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 기업부설연구소
[] 연구개발전담부서**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일수	처리기간	10일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기업체	명 칭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기업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년 월 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그 밖의 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소기업 []벤처기업(년 월 일)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연구원·교원 창업기업 []그 밖의 유형	
업종(KSIC) (주 생산품)	()	()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신청 분야		[]과학기술 []서비스		[]과학기술 []서비스					
	연구 분야									
	소재지	주소(빌딩/호실)								
			전화번호							
	연락처	팩스번호								
			성 명							
	기업 부설 연구 소장	직 위								
			전임 여부	[]전 임 []겸 임	[]전 임 []겸 임					
	연구개발 전담부서	연구개발 인력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용		변 경 후		
				연구시설 내 근무		전 입	전 출	연구시설 내 근무		
				박 사	명	명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명	명
				전문대	명	명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보조원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관리직원				명	명	명	명	명	명	
계	명	명	명	명	명	명				
연구기자재		총 종		총 종						
연구공간	유 형		전용면적	유 형		전용면적				
	[]소유 []임대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	m ²	[]소유 []임대	[]건물 전체 []독립공간 []분리구역	m ²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하

변경신고 사항		첨부서류
기 업 체	명 칭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소 재 지	▷ 변경 후 소재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대 표 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기업 유형	▷ 기업 유형(대, 중견, 중, 소)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중소기업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 변경 업종의 KSIC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업 종	(중소기업기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기업부설 연 구 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명 칭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출입구 현판 사진
	연구 분야	▷ 기업부설연구소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 개요서(별지 제2호서식) 및 연구기자재 현황(별지 제3호서식) 각 1부 ▷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소 재 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기업부설연구소장	▷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개발인력 현황(별지 제4호서식)
	연구개발인력	(근무 중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개발인력을 모두 기재합니다)
	연구공간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내부 도면(전용 출입구 현판 및 내부 사진 포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기업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1. 변경 전 사항은 전부 적고 변경 후 사항은 해당 사항만 적습니다.
2. 주소지가 빌딩 내에 있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적습니다.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개월
신청인 (기업)	기업명	대표자	
	설립일	업종	
	주 생산품	주 연구분야	
	종업원 수	연구전담요원 수	
	기업 유형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본사) (연구소)	상장여부	
지정대상 기업부설 연구소	연구소명	연구소 인정번호	연구소 인정일자
핵심 보유 기술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		
	기술핵심 단어		
지정 신청 업무 담당자	부서	직위	성명
	전화	핸드 폰	이메일
주요 사업			
회사 연혁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첨부 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의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1부 2.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각 1부 3. 최근 3년간의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1부 4.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
2. 영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기업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중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소기업 또는 중기업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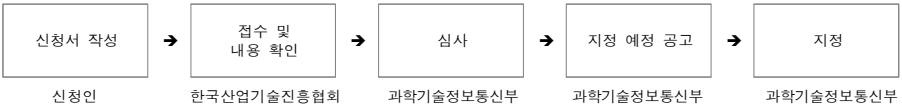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업종"란에는 해당 기업의 주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KSIC코드)에 따라 해당 코드를 적습니다.
- "주 생산품"란에는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대표적인 제품, 서비스를 적습니다(예, 자동차 타이어, 핸드폰, 온라인 게임, 조경설계 등).
- "주 연구분야"란에는 구체적인 연구 내용의 대표적인 활동을 적습니다.
- "종업원 수"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상시 종업원 수를 적습니다(일용직은 제외합니다).
- "연구전담요원 수"란에는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적습니다(연구보조원, 연구관리 직원은 제외합니다).
- "기업 유형"란의 구분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8조를 기준으로 선택합니다.
- "주소"란의 "(본사)"에는 해당 기업이 위치하고 있는 주소제지의 번지수와 빌딩명, 빌딩 호수까지 적고, "(연구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소재지를 적습니다.
- "상장여부"란은 코스닥, 코스피의 상장 여부를 적습니다.
- "연구소명"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연구소명을 적습니다.
- "연구소 인정번호"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에 기재된 인정번호를 적습니다.
- "연구소 인정일자"란에는 최초로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인정일자를 적습니다.
- "핵심보유 기술의 명칭"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명칭을 적습니다.
- "기술핵심 단어"란에는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개발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를 적습니다.
- "주요사업"란에는 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내용을 적습니다.
- "회사연혁"란은 기업의 창립일부터 현재까지의 주요 연혁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신청기업 설명서

1. 제조업 부문 신청기업 설명서

1.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재 무 상 태	① 총자산(원)			
	② 총부채(원)			
	③ 부채비율(%)			
	④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원)			
연구 개 발 및 주 요 실 적	⑤ 매출액(원)			
	⑥ 연구개발비(원)			
	⑦ 외부 연구개발비 금액(원)			
	⑧ 연구장비 투자금액(원)			
	⑨ 종업원 수(명)			
	⑩ 연구전담요원 수(명)			
	⑪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박사 수(명)			
	⑫ 정부포상(수상) 실적			
	⑬ 대외 기술인증 실적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신청서 작성방법

*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 ①~⑧ 항목은 회계결산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전년도 회계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 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⑨~⑬ 항목은 각 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재무상태

- ① 총자산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② 총부채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③ 부채비율 : 재무상태표의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부채총액/자기자본)을 적습니다.
④ 보유 산업재산권 금액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손익계산

- ⑤ 매출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⑥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해당 연도 발생분 기준) +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판매비,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도 포함합니다)
⑦ 외부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와 외부에서 투입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⑧ 연구장비 투자금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와 연구장비 관련 투자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 ⑨ 종업원 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조회를 통해 작성합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⑩ 연구전담요원 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⑪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박사 수 : ⑩에 적은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2. 기술혁신 추진전략 및 역량 (10쪽 중 제3쪽)

구분	주요내용
① 경영자 기술혁신 리더십	기술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및 방침이 정립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② 기술혁신 중장기전략 수립	구체적인 중장기(향후 3 ~ 5년) 기술개발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설명합니다.
③ 개발환경 및 연구장비 보유 수준	기업 내 창조적 개발환경의 수준과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현황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④ 연구개발인력 관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설명합니다. -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유치·보유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 연구개발인력의 규모와 그 구성의 우수성
⑤ 기술혁신 수행능력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 기술혁신 수행 능력 등을 설명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연구·생산 시설 및 외부 연구·생산 시설의 활용 전략 및 체계와 그 성과 등
⑥ 기술축적 및 활용시스템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자료화 상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가진 지식 및 매뉴얼·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활용하는 상태 등을 설명합니다.
⑦ 기술보호 수준	내부 보안관리규정의 보유·관리,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보안전담 조직·인력 보유,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정기수행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하여 기술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도를 설명합니다.
⑧ 지식재산권 경쟁력수준	기술혁신의 결과로 출원 또는 지식재산권의 경쟁정도를 설명합니다. -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 성과 등
⑨ 사업화 추진역량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 및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등을 설명합니다.
⑩ 기술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향상도	기술혁신의 결과에 따라 기술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이 어떻게 향상될지 등을 설명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3. 연구개발 개요서 (10쪽 중 제4쪽)

① 핵심 보유기술 및 기술경쟁력 (작성내용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 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②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내용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 및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④ 지난 3년간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작성 개수에 제한은 없으며, 자체 연구개발과제나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작성 가능합니다)					
연 도	연구과제명	연구내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관련제품	관련매출액 (백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4. 대표이사 및 핵심연구인력

(10쪽 중 제5쪽)

대표이사 주요 경력	■ ■ ■ ■		
핵심연구인력 약력(4명 이내)			
	■ ■ ■ ■		■ ■ ■ ■
	■ ■ ■ ■		

5.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제품명		품목구분	
	출시일		연매출액	
	제품 경쟁력 및 장점	■ ■ ■ ■ ■ ■ ■ ■ ■ ■	제품사진	

6.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구 분	명 칭	발명자	국 명	등록일	등록번호	공동출원 기 관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현황

구 분	명 칭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인증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II. 서비스업 부문 신청기업 설명서

(10쪽 중 제6쪽)

1.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

※ 제7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20 년*	20 년*	20 년*
재무 상태	① 총자산(원)			
	② 매출액(원)			
연구개발 및 주요 실적	③ 연구개발비(원)			
	④ 종업원 수(명)			
	⑤ 연구전담요원 수(명)			
	⑥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박사 수(명)			
	⑦ 연구개발인력의 교육훈련 투자 금액(원)			
	⑧ 대외 서비스인증 실적			
	⑨ 정부포상(수상) 실적			

위와 같이 작성한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청서 작성방법

* 주요 재무제표 및 연구개발 실적은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 ※ ①~⑧ 항목은 회계결산 기준으로 작성하고, 직전년도 회계결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전년도부터 과거 3년간의 실적을 적습니다.
⑨~⑬ 항목은 각 연도 12월31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재무상태

- ① 총자산 : 각 연도의 재무상태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2. 손익계산

- ② 매출액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③ 연구개발비 : 각 연도의 손익계산서 및 무형자산(개발비) 증감명세서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 : 재무상태표상 무형자산 개발비(해당 연도 발생분 기준) + 손익계산서상 연구비 또는 경상개발비(판매비, 관리비 또는 제조경비도 포함합니다)

3. 연구개발

- ④ 종업원 수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조치를 통해 작성합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⑤ 연구전담요원 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은 제외하고 작성합니다.
⑥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박사 수 : ⑤에 적은 연구전담요원 중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보유한 사람의 수를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⑦ 연구개발인력의 교육훈련 투자금액 : ⑤에 적은 연구전담요원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해 투입한 금액을 적습니다(각 연도 12월31일 기준).
⑧ 대외 서비스인증 실적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서비스 관련 대외 인증 건수를 적습니다.
⑨ 정부포상(수상) 실적 : 신청기업이 해당 연도에 정부로부터 50여받은 포상 건수를 적습니다.

2. 기술(서비스)혁신 추진전략 및 역량

구분	주요내용
① 경영자 기술(서비스) 혁신 리더십	기술(서비스)혁신에 대한 경영자의 의지 및 방침이 정립되어 있는지 등을 설명합니다.
② 기술(서비스)혁신 중장기전략수립	구체적인 중장기(향후 3 ~ 5년) 기술(서비스)개발 세부추진계획의 수립 여부 및 그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설명합니다.
③ 개발환경 및 연구장비 보유 수준	기업 내 창조적 개발환경의 수준과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시험장비 보유 현황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④ 연구인력 관리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관리시스템 등을 설명합니다. - 우수 연구개발인력을 유치·보유하기 위한 기업의 활동 - 연구개발인력의 규모와 그 구성의 우수성
⑤ 기술(서비스)혁신 수행능력	신규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체 기술(서비스)혁신 수행 능력 등을 설명합니다. - 보유하고 있는 연구·생산 시설 및 외부 연구·생산 시설의 활용 전략 및 체계와 그 성과 등
⑥ 기술(서비스)축적 및 활용시스템	보고서, 분석자료, 사업계획서 등의 문서화/자료화 실태, 개발에 참여한 인력이 가진 지식 및 매뉴얼·데이터베이스 등을 관리·활용하는 실태 등을 설명합니다.
⑦ 기술(서비스)보호 수준	내부 보안관리규정의 보유·관리, 보안심사위원회의 운영, 보안전담 조직·인력 보유, 보안점검 및 보안교육 정기수행 실시 여부 등을 포함하여 기술(서비스)보안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 정도를 설명합니다.
⑧ 지식재산권 경쟁력수준	기술혁신의 결과로 출원 또는 지식재산권의 경쟁정도를 설명합니다. - 개발하거나 보유한 기술의 우수성 및 활용 성과 등
⑨ 사업화 추진역량	제품생산에 필요한 생산기술 및 품질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 등을 설명합니다.
⑩ 기술(서비스)경쟁력 및 시장경쟁력 향상도	기술혁신의 결과에 따라 기술(서비스)경쟁력과 시장경쟁력이 어떻게 향상될지 등을 설명합니다.

3. 연구개발 개요서

- ① 핵심 보유기술(서비스) 및 기술경쟁력
(작성내용은 우수기업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 시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② 기업부설연구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성과내용

- ③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한 전략 및 내용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수행한 업무를 중심으로 작성합니다)

- ④ 지난 3년간 수행한 대표적인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과제 작성 개수에 제한은 없으며, 자체 연구개발과제나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도 작성 가능합니다)

연 도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내 용	연구개발비 (백만원)	관련 제품	관련 매출액 (백만원)

210mm×297mm(백상지 80g/㎡)

4. 대표이사 및 핵심연구인력

대표이사 주요 경력	■ ■ ■ ■		
핵심연구인력 약력(4명 이내)			
	■ ■ ■ ■		■ ■ ■ ■
	■ ■ ■ ■		

5. 대표 제품(기재할 제품이 많을 경우에는 표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1	제품명		품목구분	
	출시일		연매출액	
	제품 경쟁력 및 장점	■ ■ ■ ■ ■ ■ ■ ■	제품사진	

6. 산업재산권 등록 현황

구 분	명 칭	발명자	국 명	등록일	등록번호	공동출원 기 관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7. 정부부처 포상 및 인증 현황

구 분	명 칭	발행처	일 자
정부포상			
정부인증			

※ 관련 증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첨부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지 정 번 호:
지 정 일 자:
기 관 명:
대 표 자 명:
연 구 소 명:
연 구 분 야:
주 소:

위 연구소는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하고,
기술을 활용한 가치창출 잠재력이 높아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로 지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직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예정 공고에 관한 의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의견제출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의견제출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첨이 가능합니다.)

의견 내용	위 의견을 증명하는 서류 목록 1. 2. 3.
-------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기업 연구소 지정 예정 또는 지정 제외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또는 기업명 및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귀중

첨부서류	의견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수수료 없음
------	----------------------	--------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	--	------	-----

신청인	기업명		대표자	
	주소		전화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 (휴대전화)	팩스번호	이메일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사유	[] 지정서 잃어버렸거나 지정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 지정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원본(지정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서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	------	------

신청인	명칭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설립 근거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또는 대리인)

(전화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정관 2.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운영규정 3.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운영계획서 4.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인력, 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5. 기업 연구개발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예산조달계획 6.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7. 사업자등록증 사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는 제외한다)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재	→	지정
신청인		발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발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발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 부장관)		발급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210mm×297mm[백상지(80g/㎡)]